TOUCH 20/20 2021-01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2021. 3.

연구책임자 :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참여연구원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π-TOUCH연구원 Pi-TOUCH INSTITUTE
K-BIZ 중소기업중앙회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라 정 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참여연구원 추 문 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요 약 ····· i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및 범위 ····· 5

Ⅱ. 가업상속세 관련 현황 ····· 7

1. 가업상속세 관련 실태조사 ····· 9
2. 가업상속세율 ····· 11
3. 가업상속공제제도 ····· 12

Ⅲ. 경제적 파급효과 ····· 15

1. 분석모형 설계 ····· 17
2. 정량분석 절차 및 파라미터 값 ····· 18
3. 정량분석 결과 ····· 22

Ⅳ. 발전방향 ····· 31

1. 가업상속세율 인하 ····· 33
2.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 34

부록 ····· 35

참고문헌 ····· 47

표 목 차

〈표 2-1〉 상속세율 ····· 12
〈표 3-1〉 파라미터 값 ····· 21
〈표 3-2〉 관측치와 모형산출 값 비교 ····· 21
〈표 3-3〉 가업상속세율 50% 인하 시 변수 변화율 ····· 25
〈표 3-4〉 가업상속세율 100% 인하 시 변수 변화율 ····· 26
〈표 3-5〉 가업상속세율 인하 시 거시변수 및 직장인 월급 변화율 ··· 28
〈표 3-6〉 주요 거시지표 및 월 평균 임금 현황 ····· 29
〈표 3-7〉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실물단위) ····· 29

그 림 목 차

〈그림 2-1〉 가업승계 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 9
〈그림 2-2〉 가업승계 시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 10
〈그림 3-1〉 모형의 틀 ····· 17
〈그림 3-2〉 정량분석 절차 ····· 18
〈그림 3-3〉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 ····· 23

요 약

1. 서론

본 연구는 가업상속세를 감면하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기업분포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가업상속세 관련 현황

가. 가업상속세 관련 실태조사

첫째,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하 2020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00개사 중 94.5%(복수응답)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 하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1,400개사 중 78.3%(단수 응답)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가업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기준 이하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5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0%	1천만원 (1억원의 10%)
5~1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30%	9천만원 (1억원의 10% + 4억원의 20%)
10~3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40%	2억 4천만원 (1억원의 10% + 4억원의 20% + 5억원의 30%)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50%	10억 4천만원 (1억원의 10% + 4억원의 20% + 5억원의 30% + 20억원의 40%)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Grossmann and Strulik(2010)의 모형에 기업 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한다. 가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한다.

그림 S-1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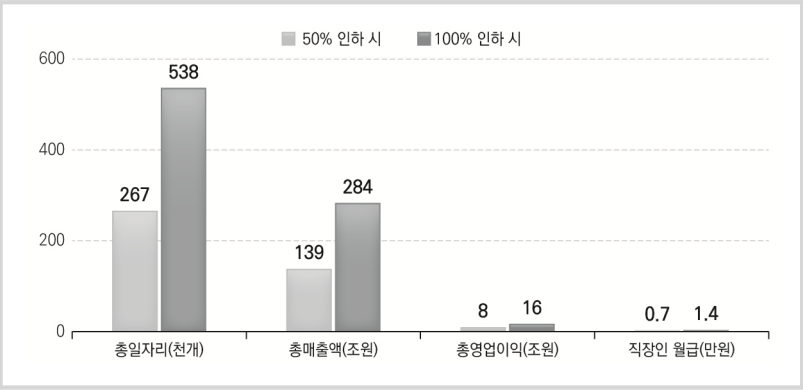

4. 발전방향

가. 가업상속세율 인하

현행 가업상속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한다. 그리스는 2003년 가업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여 가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하였다.

나.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한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

액 한도를 현행 200~500억원에서 폐지로 개선해야한다. 독일과 영국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과 금액 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가업상속에 임박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한다.

Ⅰ.
서 론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상속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해외의 뛰어난 그룹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약 11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삼성그룹의 세계적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개인 상속이 아닌 기업 상속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나 상당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1세대 소유주들이 퇴임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가업상속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만약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될까?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Grossmann and Strulik(2010)은 가업상속세 증감여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론적 모형을 만들고, 독일의 중소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업상속세 감면은 능력이 부족한 가업승계자가 기업을 계속 경영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지만, 유능한 창업자의 진입을 막아 결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llul et al.(2010)는 1990-2006년까지 38개 국가로부터 획득한

10,004개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업상속세는 해당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Tsoutsoura(2015)는 가업상속세 감면이 가족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그리스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가업상속세는 해당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매출성장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결과도 제시하였다.

라정주(2017)는 경영자의 능력을 내생화한 이론적 모형을 만들어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규모이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업상속세 감면은 고용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존연구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Grossmann and Strulik(2010)의 분석모형은 소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기업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인과 기업가 중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접근하였지만, 본 연구는 Lucas(1978)의 통제범위 모형을 활용하여 기업분포를 고려하였다. 기업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 선택의 문제를 반영한 전자의 모형에서는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분포를 고려한 상태에서 직업 선택의 문제를 반영한 본 연구에서는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Grossmann and Strulik(2010)의 분석모형은 직장인과 기업가의 효용 비교를 통해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직장인 효용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임금이지만, 기업가 효용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기업의 이윤이다. 소규모 기업에서는 임금과 이윤 비교를 통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대규모 기업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과 대규모 기업을 구분하여 직업 선택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Ellul et al.(2010)와 Tsoutsoura(2015)는 가업상속세 감면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는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다뤘다. 셋째, 라정주(2017)는 중규모이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선택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모든 기업을 다루면서 직업선택의 문제를 반영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업상속세를 감면하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기업분포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정량분석을 실시한다. 정량분석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에서는 파라미터 값을 입력한 다음 모형의 장기 균형조건들을 도출한 후 Matlab의 'fsolve' solver를 이용하여 解를 구한다. 2단계에서는 우선 1단계에서 도출된 장기균형 解를 각 변수들의 초기 값으로 선정한다. 그 다음 'dynare'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게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여 Matlab에 입력한다. 3단계에서는 구성된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Matlab에서 구동시켜 변수들의 解를 도출한다.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가업상속세를 감면할 경우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가업상속세 관련 현황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가업상속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고, 도출된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정량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간략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Ⅱ.
가업상속세 관련 현황

Ⅱ. 가업상속세 관련 현황

1. 가업상속세 관련 실태조사

〈그림 2-1〉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로 복수 응답된 것이다. 해당 설문은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하 2020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로부터 획득된 것이다. 응답한 중소기업의 94.5%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이 55.3%를 차지하였다.

그림 2-1 가업승계 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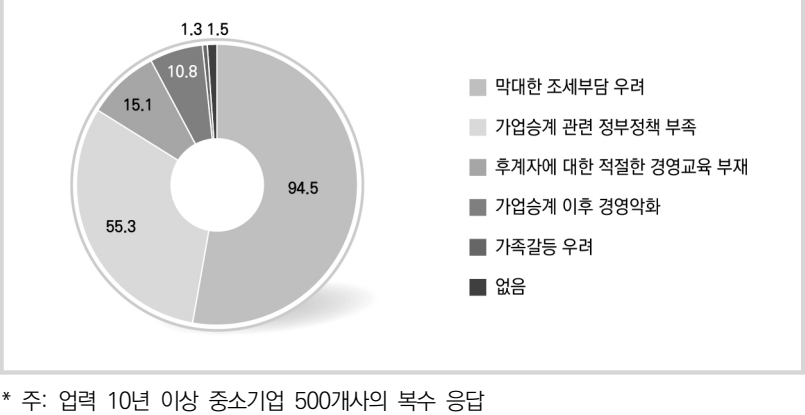

* 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의 복수 응답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2020.12.7~18)

〈그림 2-2〉는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로 단수 응답된 것이다. 해당 설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 하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된 중견기업 실태조사로부터 획득된 것이다. 응답한 중견기업의 78.3%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위를 차지한 복잡한 지분 구조는 5.8% 밖에 되지 않아 조세 부담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2-2 가업승계 시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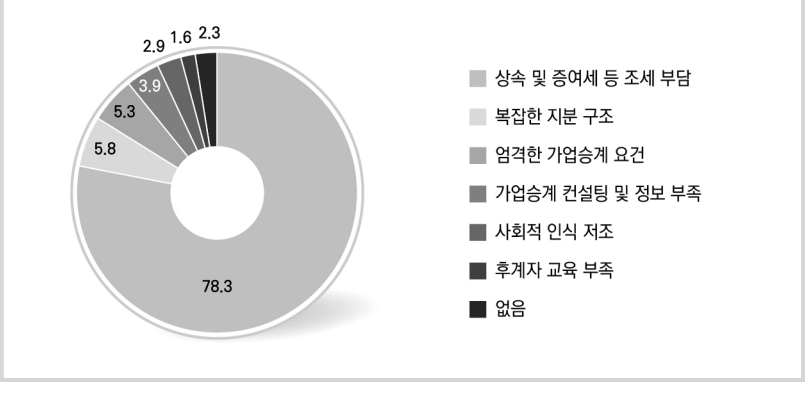

* 주: 중견기업 1,400개사의 단수 응답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9 중견기업 실태조사(2019.7.18~10.4)

2. 가업상속세율

우리나라는 부모의 대를 이어 기업을 상속할 때와 기업이 아닌 일반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율이 차등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표 2-1〉과 같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10%이다.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다. 이 경우 기준 이하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상속세 산출액이 추가 되어야 한다. 추가될 금액은 직전 과세표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천만원(1억원의 10%)이다. 과세표준이 5~10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30%이다. 이 경우 기준 이하 과세표준 5억원에 대한 상속세 산출액이 추가 되어야 한다. 추가될 금액은 이전 과세표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9천만원(1억원의 10%+4억원의 20%)이다. 과세표준이 10~30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이 경우 기준 이하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한 상속세 산출액이 추가 되어야 한다. 추가될 금액은 이전 과세표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2억 4천만원(1억원의 10%+4억원의 20%+5억원의 30%)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50%이다. 이 경우 기준 이하 과세표준 30억원에 대한 상속세 산출액이 추가 되어야 한다. 추가될 금액은 이전 과세표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억 4천만원(1억원의 10%+4억원의 20%+5억원의 30%+20억원의 40%)이다.

표 2-1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기준 이하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5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0%	1천만원 (1억원의 10%)
5~1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30%	9천만원 (1억원의 10% + 4억원의 20%)
10~3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40%	2억 4천만원 (1억원의 10% + 4억원의 20% + 5억원의 30%)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50%	10억 4천만원 (1억원의 10% + 4억원의 20% + 5억원의 30% + 20억원의 40%)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

3. 가업상속공제제도

가. 가업상속공제 개념 및 대상

안종석·송은주·정경화(2014)의 연구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가업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 2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3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첫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상장기업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한다. 둘째, 일정기간(전체 사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사전승계의 경우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3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셋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한다.

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안종석·송은주·정경화(2014)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으로서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피상속인의 보유주식 평가액×{(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이다.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한도는 정해져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 2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경영기간이 10~20년 미만인 경우 200억원, 20~3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이다.

라. 사후관리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 6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은 가업유지 의무와 고용확대 의무로 나누어진다.

가업유지 의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하지 말아야한다. 둘째, 상속 후 7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11항에 의해 사후관리 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셋째, 상속받은 지분을 7년 이상 유지해야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73조에 따라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조 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한다.

고용확대 의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하나이상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80% 이상을 유지해야하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둘째, 각 사업연도 총급여액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 평균의 80% 이상을 유지해야하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 평균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Ⅲ.
경제적 파급효과

Ⅲ.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모형 설계[1)]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Grossmann and Strulik(2010)의 모형에 기업 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그림 3-1〉은 분석모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준다. 분석모형의 경제주체는 기업가 부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과 직장인 부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매각한 후 직장인이 되거나 대를 이어 기업가가 된다. 후자의 경우 자식들은 부모처럼 직장인이 되거나 창업하여 기업가가 된다.

그림 3-1 모형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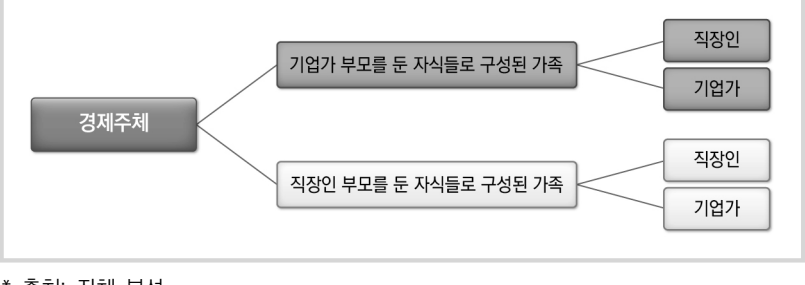

* 출처: 자체 분석

1) 분석모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한다.

2. 정량분석 절차 및 파라미터 값

가. 정량분석 절차

본 절에서는 앞에서 도출된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절차는 〈그림 3-2〉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에서는 먼저, 앞에서 살펴본 제약조건, 1계 조건, 시장 청산조건에 파라미터 값을 입력한다. 그 다음 모형의 장기 균형조건들을 도출한 후 Matlab의 'fsolve' solver를 이용하여 解를 구한다. 'fsolve' solver를 사용하는 이유는 도출된 장기균형 연립방정식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解를 구할 수 없고 수치적으로 도출해야하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는 우선 1단계에서 도출된 장기균형 解를 각 변수들의 초기 값으로 선정한다. 그 다음 'dynare'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게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여 Matlab에 입력한다. 3단계에서는 구성된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Matlab에서 구동시켜 변수들의 解를 도출한다.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3-2 정량분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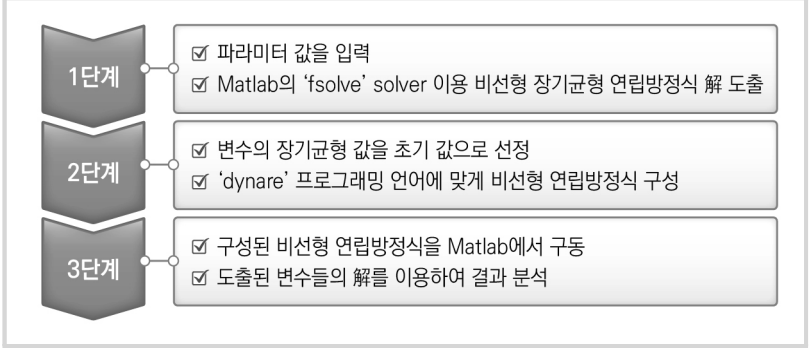

* 출처: 자체 분석

나. 파라미터 값

정량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값은 〈표 3-1〉과 같다. 본 연구는 세대 단위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하여 파라미터 값을 설정한다. 분석모형에서 한 세대는 Grossmann and Strulik(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20년이다.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2000~2019년 연 평균 실질이자율은 3.5%이다. 따라서 실질이자율 r 은 '0.7'(0.035×20년)이다.

본 연구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가업상속세율 τ_k 는 0.1~0.5의 평균 값인 '0.3'을 적용한다. 일반상속세율 τ_b 와 물려받은 자본(기업)을 매각 시 적용되는 상속세율 τ_s 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상속세율 τ_k 와 차별하여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0.3'으로 설정한다.

김명규·김성태(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에 대한 연 감가상각률은 0.04이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 δ 는 '0.8'(0.04×20년)이다.

유산 파라미터 η 는 Grossmann and Strulik(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0.91'로 설정한다.

노동공급 파라미터 ψ의 값은 Chari et al.(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1.25'를 적용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9~2018년 연 평균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각각 532,559십억원, 339,727십억원이다. 따라서 자본소득분배율은 0.389(영업잉여÷[피용자보수+영업잉여])이다. 자본의 기여도 γ 는 이 값에 맞추어 '0.389'로 설정한다.

통계청의 영리법인통계에 따르면, 2015~2018년 연 평균 영리법인 기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646,826개, 9,914,750명이다. 따라서 영리법인

기업체수 비중은 0.06이다. 기업가 부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의 비중 α 는 이 값에 맞추어 '0.06'으로 설정한다.

관측자료 또는 기존연구를 통해 획득하기 힘든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는 〈표 3-2〉에 제시된 것처럼 해당 파라미터와 연관된 관측치와 모형산출 값이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값을 설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15~2018년 연 평균 영리법인 기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각각 646,826개, 9,914,750명이기 때문에 영리법인 기업당 직장인수는 15명이다. 기업가의 통제범위 ν 와 물려받은 자본(기업)에 대한 단위판매가격 q 는 이 수치를 목표 값으로 하여 각각 '0.367', '0.825'로 설정한다. 기업가의 통제범위 ν 의 값과 물려받은 자본(기업)에 대한 단위판매가격 q 의 값이 커지면, 기업당 직장인수는 줄어든다. 모형에서 산출되는 기업당 직장인수는 15명이다.

Doing Busines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중은 0.146이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9~2018년 연평균 총실질투자(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실질GDP(국내총생산)가 각각 411,879십억원, 1,335,613십억원이기 때문에 실질GDP 대비 총실질투자 비중은 0.31이다. 창업비용 $\overline{k}$ 는 이 두 수치를 목표 값으로 하여 '0.00113'으로 설정한다. 창업비용 $\overline{k}$ 의 값이 커지면,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중과 실질GDP 대비 총실질투자 비중이 늘어난다. 모형에서 산출되는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중과 실질GDP 대비 총실질투자 비중은 각각 0.146, 0.40이다.

표 3-1 파라미터 값

기호	정의	파라미터 값
r	실질이자율	0.7
τ_k	기업상속세율	0.3
τ_b	일반상속세율	0.3
τ_s	물려받은 자본(기업)을 매각 시 적용되는 상속세율	0.3
δ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	0.8
η	유산 파라미터	0.91
ψ	노동공급 파라미터	1.25
γ	자본의 기여도	0.389
α	기업가 부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의 비중	0.06
ν	기업가의 통제범위	0.367
q	물려받은 자본(기업)에 대한 단위판매가격	0.825
$\overline{k}$	창업비용	0.00113

표 3-2 관측치와 모형산출 값 비교

구분	관측치	모형산출 값
기업당 직장인수	15명	15명
창업비용/1인당 GNI	0.146	0.146
총실질투자/실질GDP	0.31	0.40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경영능력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g(z_t)$ 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해야한다. 기업가의 경영능력은 Guner et al.(2008)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업규모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경영능력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g(z_t)$ 는 기업규모의 분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1)과 같이 파레토 분포를 선정한다.[2)]

$$g(z_t) = \varepsilon \underline{z}^{\varepsilon} z_t^{-(1+\varepsilon)}, \quad z_t \geq \underline{z} > 0, \quad \varepsilon > 1 \qquad (1)$$

여기서 ε 은 파레토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고, $\underline{z}$ 는 경영능력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ε 은 최희갑(2006)의 연구에서 도출된 '1.004' 값을 적용한다. $\underline{z}$ 는 경영능력의 최소 값이기 때문에 모형의 균형에서 최대한 '0' 값에 가까운 '0.005' 값을 설정한다.

3. 정량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각 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살펴본다.

가. 주요 결과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한다. 가업상속세

2) 기업규모의 분포로 로그정규분포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여도 본 연구의 정성적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한다.

그림 3-3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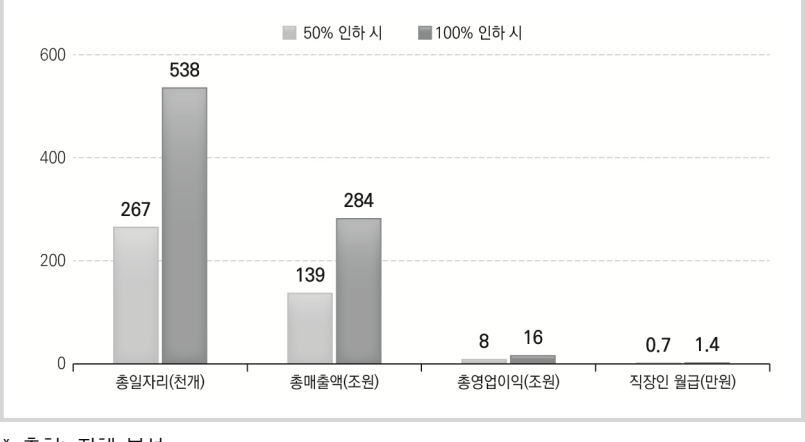

* 출처: 자체 분석

나. 세부 결과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각 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서 각 변수의 변화는 가업상속세율 인하 전 장기균형 값 대비 인하 후 장기균형 값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먼저,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각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자본량이 2.32% 증가한다.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노동수요량도 0.21% 늘어난다.

자본과 노동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0.37% 늘어난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여 이윤도 0.37% 늘어난다.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도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같은 이유로 자본량, 노동수요량, 생산량, 이윤이 각각 2.10%, 0.17%, 0.33%, 0.33% 증가한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여 투자량도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2.32%,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2.06% 늘어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단위임금이 0.17% 오른다. 노동공급함수에 의해 단위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 시간도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11%,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12% 늘어난다.

단위임금과 노동공급 시간이 증가하면, 경영능력 임계 값도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38%,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17% 상승한다. 노동소득이 늘어나면, 기업가보다는 직장인을 더 선택하기 때문에 경영능력 임계 값이 증가한다.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반유산량도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3%,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02% 줄어든다.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일반유산보다는 자본을 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표 3-3 가업상속세율 50% 인하 시 변수 변화율

구분	모형산출 값		변화율(%)
	전(0.3)	후(0.15)	
자본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5067	0.05185	2.32
노동수요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41889	0.41975	0.21
생산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12513	0.12559	0.37
이윤(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9707	0.09743	0.37
자본량(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05001	0.05106	2.10
노동수요량(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41788	0.41858	0.17
생산량(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12483	0.12524	0.33
이윤(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09683	0.09716	0.33
투자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4054	0.04148	2.32
투자량(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05114	0.05219	2.06
단위임금	0.06698	0.06709	0.17
노동공급 시간(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12251	0.12265	0.11
노동공급 시간(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12262	0.12277	0.12
경영능력 임계 값(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8083	0.08114	0.38
경영능력 임계값(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07978	0.07992	0.17
일반유산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1.08325	1.08289	-0.03
일반유산량(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1.08419	1.08397	-0.02

* 출처: 자체 분석

다음으로, 가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할 경우 각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가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자본량, 노동수요량, 생산량, 이윤, 투자량, 노동공급 시간, 경영능력 임계 값이 각각 4.73%, 0.41%, 0.76%, 0.76%, 4.73%,

0.22%, 0.78% 증가한다. 반면, 일반유산량은 0.07% 감소한다.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가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자본량, 노동수요량, 생산량, 이윤, 투자량, 노동공급 시간, 경영능력 임계 값이 각각 4.28%, 0.33%, 0.68%, 0.68%, 4.18%, 0.25%, 0.34% 증가한다. 반면, 일반유산량은 0.04%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단위임금은 0.34% 증가한다. 각 변수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이유는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할 경우와 동일하다.

표 3-4 가업상속세율 100% 인하 시 변수 변화율

구분	모형산출 값		변화율(%)
	전(0.3)	후(0.0)	
자본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5067	0.05307	4.73
노동수요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41889	0.42062	0.41
생산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12513	0.12607	0.76
이윤(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9707	0.09780	0.76
자본량(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05001	0.05215	4.28
노동수요량(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41788	0.41928	0.33
생산량(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12483	0.12567	0.68
이윤(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09683	0.09749	0.68
투자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4054	0.04246	4.73
투자량(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05114	0.05328	4.18
단위임금	0.06698	0.06721	0.34
노동공급 시간(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12251	0.12278	0.22
노동공급 시간(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12262	0.12292	0.25

구분	모형산출 값		변화율(%)
	전(0.3)	후(0.0)	
경영능력 임계 값(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8083	0.08146	0.78
경영능력 임계값(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0.07978	0.08006	0.34
일반유산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1.08325	1.08252	-0.07
일반유산량(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1.08419	1.08375	-0.04

* 출처: 자체 분석

〈표 3-5〉는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거시변수와 직장인 월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총노동수요(일자리), 총실질자본, 총매출, 총영업이익, 총실질투자, 총직장인수는 각각 0.13%, 1.93%, 0.15%, 0.15%, 1.88%, 0.01% 증가하지만, 총기업수와 총일반유산은 각각 0.19%, 0.01% 감소한다. 또한, 직장인 월급은 0.29% 상승한다. 다음으로, 가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할 경우 총노동수요(일자리), 총실질자본, 총매출, 총영업이익, 총실질투자, 총직장인수는 각각 0.27%, 3.92%, 0.31%, 0.31%, 3.83%, 0.02% 증가하지만, 총기업수와 총일반유산은 각각 0.37%, 0.02% 감소한다. 또한, 직장인 월급은 0.59% 상승한다.

표 3-5 가업상속세율 인하 시 거시변수 및 직장인 월급 변화율

구분	변화율(%)	
	50% 인하 시	100% 인하 시
총노동수요(일자리)	0.13	0.27
총실질자본	1.93	3.92
총매출	0.15	0.31
총영업이익	0.15	0.31
총실질투자	1.88	3.83
총직장인수	0.01	0.02
총기업수	-0.19	-0.37
총일반유산	-0.01	-0.02
직장인 월급	0.29	0.59

* 출처: 자체 분석

상기 효과를 실물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련 현황들을 먼저 살펴보아야한다. 〈표 3-6〉은 주요 거시지표 및 월 평균 임금 현황을 보여준다. 통계청의 영리법인통계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총종사자수·총매출액·총영업이익은 2015~2018년 평균 값으로 각각 9,915천명, 4,591조원, 252조원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임금은 2015~2018년 평균 값으로 242만원이다.

표 3-6 주요 거시지표 및 월 평균 임금 현황

구분	평균 값	연도	출처
총종사자수(천명)	9,915	2015~2018년	통계청, 영리법인통계
총매출액(조원)	4,591		
총영업이익(조원)	252		
월 평균 임금(만원)	24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와 같은 현황들을 이용하여 가업상속세율 인하 시 유발되는 실물단위 주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7천 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한다. 다음으로, 가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할 경우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8천 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한다.

표 3-7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실물단위)

구분	50% 인하 시	100% 인하 시
총일자리(천개)	267	538
총매출액(조원)	139	284
총영업이익(조원)	8	16
직장인 월급(만원)	0.7	1.4

* 출처: 자체 분석

Ⅳ.
발전방향

Ⅳ. 발전방향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일자리, 매출, 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증가한다. 가업상속세 감면을 통해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직장인 월급이 늘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가 늘어난다.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도 해결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업상속세율 인하

현행 가업상속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한다. 각 과세구간에서 절반만 인하하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한 예로 그리스를 들 수 있다. Tsoutsoura(2015)의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는 2003년 가업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였다. 이때 가업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율을 20%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가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하였다.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상속세 혜택만 받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업유지 의무와 고용확대 의무를 조건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한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과 금액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현행 200~500억원에서 폐지로 개선해야한다. 독일과 영국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과 금액 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야한다. 가업상속에 임박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활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 500개사 중에서 66.2%가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 '유보적'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록

부 록

1. 가족의 효용 극대화 문제

가.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α)

기업가 부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이다. 가족은 직장인과 기업가로 구성된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매각한 후 직장인이 되거나 대를 이어 기업가가 된다. 이 경우 가족의 효용 극대화 문제는 식(부2)의 예산제약과 식(부3)의 자본축적 조건 하 식(부1)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본량 $k_{e,t}$, 일반유산량 $b_{e,t}$, 노동공급 시간 $\ell^s_{e,t}$를 결정하는 문제로 정리된다.

$$\max_{k_{e,t},b_{e,t},\ell^s_{e,t}} u_{e,t} = c_{e,t} + \frac{\left[\int_{\underline{z}}^{\tilde{z}_{e,t}} (1-\tau_b)(1+r)b_{e,t}g(z_t)dz_t + \int_{\tilde{z}_{e,t}}^{\infty} (1-\tau_k)(1-\delta)k_{e,t}g(z_t)dz_t\right]^{1-\eta}}{1-\eta} - \frac{\left[\int_{\underline{z}}^{\tilde{z}_{e,t}} \ell^s_{e,t}g(z_t)dz_t\right]^{1+\psi}}{1+\psi} \quad \text{(부1)}$$

$$c_{e,t} = \int_{\underline{z}}^{\tilde{z}_{e,t}} [w_t\ell^s_{e,t} + (q-\tau_s)(1-\delta)k_{e,t-1} - b_{e,t}]g(z_t)dz_t + \int_{\tilde{z}_{e,t}}^{\infty} [\pi_{e,t}(z_t) - (1+r)i_{e,t} - \tau_k(1-\delta)k_{e,t-1}]g(z_t)dz_t + T_{e,t} \quad \text{(부2)}$$

$$i_{e,t} = k_{e,t} - (1-\delta)k_{e,t-1} \quad \text{(부3)}$$

여기서 τ_b, r, τ_k, δ, η, ψ, q, τ_s는 각각 일반상속세율, 실질이자율, 가업상속세율,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 유산 파라미터, 노동공급 파라미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본(기업)에 대한 단위판매가격(거래비용의 역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본(기업)을 매각 시 적용되는 상속세율이다. $\tilde{z}_{e,t}$는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나 타고나는 경영능력으로 직장인($z_{e,t} \in [\underline{z}, \tilde{z}_{e,t}]$)과 기업가 ($z_{e,t} \in [\tilde{z}_{e,t}, \infty]$)를 결정하는 임계 값이다. $u_{e,t}$, $c_{e,t}$, w_t, $\pi_{e,t}$, $i_{e,t}$, $T_{e,t}$는 각각 효용, 소비량, 단위임금, 기업가의 이윤, 투자량, 일괄이전 지출액이다.

가족의 t기 효용은 소비를 하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얻는 효용에서 노동공급을 통해 발생되는 비효용(Disutility)을 제외한 것이다. 상기 효용함수는 준선형성(Quasi-linearity)을 띄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인위적인 왜곡 없이 모형을 분석적으로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소비재를 기준재(Numeraire)로 간주하고 가격을 '1'로 표준화하였다. 식(부2)의 우변은 가족의 수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 번째 항은 가족 구성원 중 직장인의 소득으로 노동소득과 물려받은 자본(기업)을 매각한 후 상속세를 제외한 잔량에서 자식에 물려주는 일반유산량을 뺀 것이다. 두 번째 항은 가족 구성원 중 기업가의 소득으로 이윤에서 투자량과 투자비용, 물려받은 자본(기업)에 대한 상속세 산출액을 제외한 것이다. 세 번째 항은 정부에서 가족에게 지급하는 일괄이전 지출액이다. 식(부2)의 좌변은 가족의 지출로 소비재 소비량이다.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본량 $k_{e,t}$, 일반유산량 $b_{e,t}$, 노동공급 시간 $\ell^s_{e,t}$에 대한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을 구하여 정리하면, 식(부4)~식(부6)과 같다.

$$(1+r)\int_{\tilde{z}_{e,t}}^{\infty} g(z_t)dz_t = \varepsilon \underline{z}^{\varepsilon} w_t^{\frac{(1-\gamma)\nu}{(1-\gamma)\nu-1}} (1-\gamma)^{\frac{-(1-\gamma)\nu}{(1-\gamma)\nu-1}} \nu^{\frac{-(1-\gamma)\nu}{(1-\gamma)\nu-1}} \gamma\nu k_{e,t}^{\frac{1-\nu}{(1-\gamma)\nu-1}} \frac{1-(1-\gamma)\nu}{\nu[1-\varepsilon(1-\gamma)]+\varepsilon-1} \tilde{z}_{e,t}^{\frac{\nu[1-\varepsilon(1-\gamma)]+\varepsilon-1}{(1-\gamma)\nu-1}}$$
$$+\left[\int_{\underline{z}}^{\tilde{z}_{e,t}} (1-\tau_b)(1+r)b_{e,t}g(z_t)dz_t + \int_{\tilde{z}_{e,t}}^{\infty} (1-\tau_k)(1-\delta)k_{e,t}g(z_t)dz_t\right]^{-\eta} (1-\tau_k)(1-\delta)\int_{\tilde{z}_{e,t}}^{\infty} g(z_t)dz_t \quad (부4)$$

$$1=\left[\int_{\underline{z}}^{\tilde{z}_{e,t}} (1-\tau_b)(1+r)b_{e,t}g(z_t)dz_t + \int_{\tilde{z}_{e,t}}^{\infty} (1-\tau_k)(1-\delta)k_{e,t}g(z_t)dz_t\right]^{-\eta} (1-\tau_b)(1+r) \quad (부5)$$

$$w_t = \left[\ell_{e,t}^{s}\int_{\underline{z}}^{\tilde{z}_{e,t}} g(z_t)dz_t\right]^{\psi} \quad (부6)$$

식(부4)는 가업상속세율과 자본량이 반비례함을 보여준다. 즉,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량은 늘어난다. 식(부5)는 직장인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반유산량은 가업상속세율과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일반유산량도 감소한다. 일반상속세율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업상속세율만 인하하면, 자식에게 일반유산보다는 자본을 물려주는 것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식(부6)은 단위임금과 노동공급량이 비례하는 노동공급함수이다.

나.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1-\alpha$)

직장인 부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이다. 가족은 직장인과 기업가로 구성된다. 즉, 부모처럼 직장인이 되거나 창업하여 기업가가 된다. 이 경우 가족의 효용 극대화 문제는 식(부8)의 예산제약과 식(부9)의 자본축적 조건 하 식(부7)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본량 $k_{w,t}$, 일반유산량 $b_{w,t}$, 노동공급 시간 $\ell_{w,t}^{s}$를 결정하는 문제로 정리된다.

$$\max_{k_{w,t},b_{w,t},\ell^s_{w,t}} u_{w,t} = c_{w,t} + \frac{\left[\int_{\underline{z}}^{\tilde{z}_{w,t}} (1-\tau_b)(1+r)b_{w,t}g(z_t)dz_t + \int_{\tilde{z}_{w,t}}^{\infty} (1-\tau_k)(1-\delta)k_{w,t}g(z_t)dz_t\right]^{1-\eta}}{1-\eta} - \frac{\left[\int_{\underline{z}}^{\tilde{z}_{w,t}} \ell^s_{w,t}g(z_t)dz_t\right]^{1+\psi}}{1+\psi} \quad (부7)$$

$$c_{w,t} = \int_{\underline{z}}^{\tilde{z}_{w,t}} [w_t\ell^s_{w,t} + (1-\tau_b)(1+r)b_{w,t-1} - b_{w,t}]g(z_t)dz_t + \int_{\tilde{z}_{w,t}}^{\infty} [\pi_{w,t}(z_t) - (1+r)i_{w,t} + (1-\tau_b)(1+r)b_{w,t-1}]g(z_t)dz_t + T_{w,t} \quad (부8)$$

$$i_{w,t} = k_{w,t} + \bar{k} \quad (부9)$$

여기서 $\tilde{z}_{w,t}$ 는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나 타고나는 경영능력으로 직장인($z_{w,t} \in [\underline{z}, \tilde{z}_{w,t}]$)과 기업가 ($z_{w,t} \in [\tilde{z}_{w,t}, \infty]$)를 결정하는 임계 값이다. $u_{w,t}$, $c_{w,t}$, $\pi_{w,t}$, $i_{w,t}$, $T_{w,t}$, $\bar{k}$ 는 각각 효용, 소비량, 기업가의 이윤, 투자량, 일괄이전 지출액, 창업비용이다.

식(부8)의 우변은 가족의 수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 번째 항은 가족 구성원 중 직장인의 소득으로 노동소득과 물려받은 일반유산량 중 상속세를 제외한 잔량에서 자식에 물려주는 일반유산량을 뺀 것이다. 두 번째 항은 가족 구성원 중 기업가의 소득으로 이윤과 물려받은 일반유산량 중 상속세를 제외한 잔량에서 투자량과 투자비용을 뺀 것이다. 세 번째 항은 정부에서 가족에게 지급하는 일괄이전 지출액이다. 식(부8)의 좌변은 가족의 지출로 소비재 소비량이다.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본량 $k_{w,t}$, 일반유산량 $b_{w,t}$, 노동공급 시간 $\ell^s_{w,t}$ 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하여 정리하면, 식(부10)~식(부12)와 같다.

$$(1+r)\int_{\tilde{z}_{w,t}}^{\infty} g(z_t)dz_t = \varepsilon \underline{z}^{\varepsilon} w_t^{\frac{(1-\gamma)\nu}{(1-\gamma)\nu-1}} (1-\gamma)^{\frac{-(1-\gamma)\nu}{(1-\gamma)\nu-1}} \nu^{\frac{-(1-\gamma)\nu}{(1-\gamma)\nu-1}} \gamma\nu k_{w,t}^{\frac{1-\nu}{(1-\gamma)\nu-1}} \frac{1-(1-\gamma)\nu}{\nu[1-\varepsilon(1-\gamma)]+\varepsilon-1} \tilde{z}_{w,t}^{\frac{\nu[1-\varepsilon(1-\gamma)]+\varepsilon-1}{(1-\gamma)\nu-1}}$$

$$+\left[\int_{\underline{z}}^{\tilde{z}_{w,t}} (1-\tau_b)(1+r)b_{w,t}g(z_t)dz_t + \int_{\tilde{z}_{w,t}}^{\infty} (1-\tau_k)(1-\delta)k_{w,t}g(z_t)dz_t\right]^{-\eta} (1-\tau_k)(1-\delta)\int_{\tilde{z}_{w,t}}^{\infty} g(z_t)dz_t \quad (부10)$$

$$1=\left[\int_{\underline{z}}^{\tilde{z}_{w,t}} (1-\tau_b)(1+r)b_{w,t}g(z_t)dz_t + \int_{\tilde{z}_{w,t}}^{\infty} (1-\tau_k)(1-\delta)k_{w,t}g(z_t)dz_t\right]^{-\eta} (1-\tau_b)(1+r) \quad (부11)$$

$$w_t = \left[\ell_{w,t}^{s}\int_{\underline{z}}^{\tilde{z}_{w,t}} g(z_t)dz_t\right]^{\psi} \quad (부12)$$

2. 기업가의 이윤 극대화 문제

가.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α)

기업가 부모를 둔 자식들 중 기업가는 식(부14)의 제약 하 식(부13)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max_{\ell_{e,t}} \pi_{e,t} = y_{e,t} - w_t\ell_{e,t} \quad (부13)$$

$$y_{e,t} = z_t^{1-\nu}(\ell_{e,t}^{1-\gamma}k_{e,t}^{\gamma})^{\nu} \quad (부14)$$

여기서 $\ell_{e,t}$, $y_{e,t}$, ν, γ는 각각 노동수요량, 생산량, 기업가의 통제범위, 자본의 기여도이다.

기업가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수요량 $\ell_{e,t}$ 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하여 정리하면, 식(부15)와 같다.

$$\ell_{e,t} = z_t^{\frac{\nu-1}{(1-\gamma)\nu-1}} w_t^{\frac{1}{(1-\gamma)\nu-1}} (1-\gamma)^{\frac{-1}{(1-\gamma)\nu-1}} \nu^{\frac{-1}{(1-\gamma)\nu-1}} k_{e,t}^{\frac{-\gamma\nu}{(1-\gamma)\nu-1}} \quad (부15)$$

식(부15)에서 도출된 노동수요량을 식(부14)에 대입하면, 최적 생산량이 식(부16)과 같이 도출된다.

$$y_{e,t} = z_t^{\frac{\nu-1}{(1-\gamma)\nu-1}} w_t^{\frac{(1-\gamma)\nu}{(1-\gamma)\nu-1}} (1-\gamma)^{\frac{-(1-\gamma)\nu}{(1-\gamma)\nu-1}} \nu^{\frac{-(1-\gamma)\nu}{(1-\gamma)\nu-1}} k_{e,t}^{\frac{-\gamma\nu}{(1-\gamma)\nu-1}} \quad (부16)$$

식(부15)~식(부16)에서 도출된 노동수요량과 생산량을 식(부13)에 대입하면, 기업가의 최적 이윤이 식(부17)과 같이 도출된다.

$$\pi_{e,t} = z_t^{\frac{\nu-1}{(1-\gamma)\nu-1}} w_t^{\frac{(1-\gamma)\nu}{(1-\gamma)\nu-1}} (1-\gamma)^{\frac{-(1-\gamma)\nu}{(1-\gamma)\nu-1}} \nu^{\frac{-(1-\gamma)\nu}{(1-\gamma)\nu-1}} k_{e,t}^{\frac{-\gamma\nu}{(1-\gamma)\nu-1}} [1-(1-\gamma)\nu] \quad (부17)$$

나.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1-α)

직장인 부모를 둔 자식들 중 기업가는 식(부19)의 제약 하 식(부18)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max_{\ell_{w,t}} \pi_{w,t} = y_{w,t} - w_t \ell_{w,t} \quad \text{(부18)}$$

$$y_{w,t} = z_t^{1-\nu} (\ell_{w,t}^{1-\gamma} k_{w,t}^{\gamma})^{\nu} \quad \text{(부19)}$$

여기서 $\ell_{w,t}$와 $y_{w,t}$는 각각 노동수요량, 생산량이다.

기업가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수요량 $\ell_{w,t}$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하여 정리하면, 식(부20)과 같다.

$$\ell_{w,t} = z_t^{\frac{\nu-1}{(1-\gamma)\nu-1}} w_t^{\frac{1}{(1-\gamma)\nu-1}} (1-\gamma)^{\frac{-1}{(1-\gamma)\nu-1}} \nu^{\frac{-1}{(1-\gamma)\nu-1}} k_{w,t}^{\frac{-\gamma\nu}{(1-\gamma)\nu-1}} \quad \text{(부20)}$$

식(부20)에서 도출된 노동수요량을 식(부19)에 대입하면, 최적 생산량이 식(부21)과 같이 도출된다.

$$y_{w,t} = z_t^{\frac{\nu-1}{(1-\gamma)\nu-1}} w_t^{\frac{(1-\gamma)\nu}{(1-\gamma)\nu-1}} (1-\gamma)^{\frac{-(1-\gamma)\nu}{(1-\gamma)\nu-1}} \nu^{\frac{-(1-\gamma)\nu}{(1-\gamma)\nu-1}} k_{w,t}^{\frac{-\gamma\nu}{(1-\gamma)\nu-1}} \quad \text{(부21)}$$

식(부20)~식(부21)에서 도출된 노동수요량과 생산량을 식(부18)에 대입하면, 기업가의 최적 이윤이 식(부22)와 같이 도출된다.

$$\pi_{w,t} = z_t^{\frac{\nu-1}{(1-\gamma)\nu-1}} w_t^{\frac{(1-\gamma)\nu}{(1-\gamma)\nu-1}} (1-\gamma)^{\frac{-(1-\gamma)\nu}{(1-\gamma)\nu-1}} \nu^{\frac{-(1-\gamma)\nu}{(1-\gamma)\nu-1}} k_{w,t}^{\frac{-\gamma\nu}{(1-\gamma)\nu-1}} [1-(1-\gamma)\nu] \quad \text{(부22)}$$

3. 직업선택의 문제

가.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기업가 부모를 둔 자식들은 직장인과 기업가 중 어느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즉, 직장인의 소득과 기업가의 소득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과 기업가를 결정하는 임계 값 $\tilde{z}_{e,t}$ 는 식(부23)에 의해 결정된다.

$$w_t \ell^s_{e,t} + (q-\tau_s)(1-\delta)k_{e,t-1} - b_{e,t}$$
$$= \pi_{e,t}(\tilde{z}_{e,t}) - (1+r)i_{e,t} - \tau_k(1-\delta)k_{e,t-1} \qquad \text{(부23)}$$

식(부17)의 $\pi_{e,t}$ 와 식(부3)의 $i_{e,t}$ 를 식(부23)에 대입하면, 식(부24)와 같다.

$$w_t \ell^s_{e,t} + (q-\tau_s)(1-\delta)k_{e,t-1} - b_{e,t} = \tilde{z}_{e,t}^{\frac{\nu-1}{(1-\gamma)\nu-1}} w_t^{\frac{(1-\gamma)\nu}{(1-\gamma)\nu-1}} (1-\gamma)^{\frac{-(1-\gamma)\nu}{(1-\gamma)\nu-1}} \nu^{\frac{-(1-\gamma)\nu}{(1-\gamma)\nu-1}} k_{e,t}^{\frac{-\gamma\nu}{(1-\gamma)\nu-1}} [1-(1-\gamma)\nu]$$
$$-(1+r)[k_{e,t} - (1-\delta)k_{e,t-1}] - \tau_k(1-\delta)k_{e,t-1} \qquad \text{(부24)}$$

나.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직장인 부모를 둔 자식들은 직장인과 기업가 중 어느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즉, 직장인의 소득과 기업가의 소득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과 기업가를 결정하는 임계 값 $\tilde{z}_{w,t}$ 는 식(부25)에 의해 결정된다.

$$w_t \ell^s_{w,t} + (1-\tau_b)(1+r)b_{w,t-1} - b_{w,t}$$
$$= \pi_{w,t}(\tilde{z}_{w,t}) - (1+r)i_{w,t} + (1-\tau_b)(1+r)b_{w,t-1} \quad (부25)$$

식(부22)의 $\pi_{w,t}$와 식(부9)의 $i_{w,t}$를 식(부25)에 대입하면, 식(부26)과 같다.

$$w_t \ell^s_{w,t} + (1-\tau_b)(1+r)b_{w,t-1} - b_{w,t} = \tilde{z}_{w,t}^{\frac{\nu-1}{(1-\gamma)\nu-1}} w_t^{\frac{(1-\gamma)\nu}{(1-\gamma)\nu-1}} (1-\gamma)^{\frac{-(1-\gamma)\nu}{(1-\gamma)\nu-1}} \nu^{\frac{-(1-\gamma)\nu}{(1-\gamma)\nu-1}} k_{w,t}^{\frac{-\gamma\nu}{(1-\gamma)\nu-1}} [1-(1-\gamma)\nu]$$
$$-(1+r)(k_{w,t} + \bar{k}) + (1-\tau_b)(1+r)b_{w,t-1} \quad (부26)$$

4. 시장 청산조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재시장과 노동시장이 존재한다. Walras의 법칙에 따라 노동시장 청산조건이 충족되면, 소비재시장 청산조건은 자동으로 충족된다. 따라서 소비재시장 청산조건을 제외하고 노동시장 청산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pha \int_{\underline{z}}^{\tilde{z}_{e,t}} \ell^s_{e,t} g(z_t) dz_t + (1-\alpha) \int_{\underline{z}}^{\tilde{z}_{w,t}} \ell^s_{w,t} g(z_t) dz_t$$
$$= \alpha \int_{\tilde{z}_{e,t}}^{\infty} \ell_{e,t}(z_t) g(z_t) dz_t + (1-\alpha) \int_{\tilde{z}_{w,t}}^{\infty} \ell_{w,t}(z_t) g(z_t) dz_t \quad (부27)$$

5. 모형의 解

앞에서 살펴본 제약조건, 1계 조건, 시장 청산조건을 활용하여 비선형연립방정식을 구성한 뒤 내생변수 $k_{e,t}$, $b_{e,t}$, $\ell^s_{e,t}$, $k_{w,t}$, $b_{w,t}$, $\ell^s_{w,t}$, $\ell_{e,t}$, $y_{e,t}$, $\pi_{e,t}$, $\ell_{w,t}$, $y_{w,t}$, $\pi_{w,t}$, $\tilde{z}_{e,t}$, $\tilde{z}_{w,t}$, w_t, $i_{e,t}$, $i_{w,t}$에 대한 解를 구한다. 각 내생변수들의 초기 값은 모형의 장기균형 解를 활용한다.

참고문헌

김명규·김성태(2010), "동태 CGE 모형을 이용한 한국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58(3), pp. 75-119.

라정주(2017),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규모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5(3), pp. 47-76.

안종석·송은주·정경화(2014), "주요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14-01.

최희갑(2006), "Zipf 분포에 기초한 한국의 기업 규모 분포 분석," 통계연구, 11(2), pp. 73-95.

Chari, V. V., P. J. Kehoe, and E. R. McGrattan(2000), "Sticky price models of the business cycle: can the contract multiplier solve the persistence problem?," Econometrica, 68(5), pp. 1151-1179.

Ellul, A., M. Pagano, and F. Panunzi(2010), "Inheritance law and investment in family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100, pp. 2414-2450.

Grossmann, V. and H. Strulik(2010), "Should continued family firms face lower taxes than other e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 pp. 87-101.

Guner, N., G. Ventura, and Y. Xu(2008),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size-dependent policie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1(4), pp. 721-744.

Lucas, R. E.(1978),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9(2), pp. 508-523.

Tsoutsoura, M.(2015), "The effect of succession taxes on family firm investment: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Journal of Finance, 70, pp. 649-688.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발행일 : 2021년 3월
발행처 : (재)파이터치연구원
주 소 :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길 16(AIA 타워 8층)
전 화 : 02-6190-8975
팩 스 : 02-6190-897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π-TOUCH 연구원
π-TOUCH INSTITUTE

K-BIZ 중소기업중앙회